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 3. .

법제처 심사 전

법무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소속기관인 원주교도소에 안정적 분류심사 업무수행을 위해 1개 과를 신설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39명(5급 1명, 6급 4명, 7급 5명, 8급 14명, 9급 15명)을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김해국제공항 내·외국인 입·출국 편의성 제고, 국경관리 강화 및 출국대기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한 사증 적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밀착 감독 등을 통한 소년범죄 대응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에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19명(6급4, 7급5, 8급5, 9급5) 및 법무부 소속기관인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스마트위치 감독 장비 및 시스템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1명(7급1)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법무부에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도소 등 교정기관 소재지 기재 범위를 시·군 단위로 간소화 하며, 별표에 표기된 내용 중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1)을 행정직군으로, 법무부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1)을 과학기술직군으로 각각 전환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별표에 표기된 내용 중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령 제 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5항 중 “제21조제5항, 제6항 및 제9항”을 “제21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1조제7항 및 제8항”을 “제21조제7항, 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천안개방교도소·경북직업훈련교도소·원주교도소·안동교도소·공주교도소·경북북부제3교도소·홍성교도소·경주교도소·강릉교도소·장흥교도소·영월교도소·해남교도소·상주교도소·정읍교도소·강원북부교도소~~”를 “~~천안개방교도소·경북직업훈련교도소·안동교도소·공주교도소·경북북부제3교도소·홍성교도소·경주교도소·강릉교도소·장흥교도소·영월교도소·해남교도소·상주교도소·정읍교도소·강원북부교도소~~”로 하고, 같은 표 중 “~~여주교도소·순천교도소·서울남부교도소·목포교도소·김천소년교도소~~”를 “~~여주교도소·순천교도소·서울남부교도소·목포교도소·김천소년교도소·원주교도소~~”로 한다.

별표 3의 부산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 중 “~~다만, 중~~”을 “~~다만,~~”으로 한다.

별표 5 중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14”를 “15”로, 사무운영서기보 “20”을 “19”로 한다.

별표 5의2 중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14”를 “15”로, 사무운영서기보 “20”을 “19”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641”을 각각 “16,680”으로, 교정관 “346”을 “347”로, 교감 “1,500”을 “1,504”로, 교위 “1,840”을 “1,845”로, 교사 “5,595”를 “5,609”로, 교도 “6,043”을 “6,058”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641”을 각각 “16,680”으로, 교정관 “357”을 “358”로, 교감 “1,489”를 “1,493”으로, 교위 “1,840”을 “1,845”로, 교사 “5,595”를 “5,609”로, 교도 “6,043”을 “6,058”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144”를 각각 “2,164”로, 보호주사 “380”을 “384”로, 보호주사보 “516”을 “522”로, 보호서기 “505”를 “510”으로, 보호서기보 “431”을 “436”으로, 공업서기보 “3”을 “4”로, 기계운영서기보 “1”을 “0”으로 한다.

별표 11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144”를 각각 “2,164”로, 보호주사 “380”을 “384”로, 보호주사보 “525”를 “531”로, 보호서기 “514”를 “519”로, 보호서기보 “413”을 “418”로, 공업서기보 “3”을 “4”로, 기계운영서기보 “1”을 “0”으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636”을 각각 “2,646”으로, 출입국관리주사 “446”을 “448”로, 출입국관리주사보 “710”을 “714”로, 출입국관리서기 “704”를 “706”으로, 출입국관리서기보 “526”을 “528”로 한다.

별표 12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636”을 각각 “2,646”으로, 출입국관리주사 “435”를 “437”로, 출입국관리주사보 “710”을 “714”로, 출입국관리서기 “704”를 “706”으로, 출입국관리서기보 “526”을 “528”로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도소 및 구치소 지소의 명칭 · 위치(제17조관련)

명 칭	위 치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경기도 평택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충청남도 논산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충청남도 서산시

[별표 1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5조 관련)

1. 법무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인권국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9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2027년 3월 31일까지
2) 국제법무국	1명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나급)	2026년 6월 30일까지
3)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지원과	6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2026년 6월 30일까지
4)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지역채류지원과	6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1명 (6급 1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2. 법무부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김포공항출입국 · 외국인사무소 전자여행허가센터	12명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2027년 9월 30일까지

	8급 3명, 9급 3명)	
2) 외국인보호위원회 기획 총괄과	1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2명, 7급 3명)	2028년 3월 31일까지
3) 외국인보호위원회 조사과	1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3명, 7급 4명)	2028년 3월 31일까지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마 약사범재활과	4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5) 부산교도소 마약사범재 활과	4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6) 청주여자교도소 마약사 범재활과	4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7) 광주교도소 마약사범재 활과	4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 호관찰소)	101명 (6급 19명, 7급 33명, 8급 32명, 9급 17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2) 전자보석 결정전 조사 등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53명 (6급 10명, 7급 18명, 8급 16명, 9급 9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3)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 전담(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13명 (6급 3명, 7급 5명, 8급 3명, 9급 2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보호소)		
4)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 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 제센터)	88명 (6급 17명, 7급 29명, 8급 29명, 9급 13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5)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 전담(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1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6)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 호관찰소)	32명 (6급 8명, 7급 12명, 8급 12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7)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 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 제센터)	20명 (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8)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 · 외국인청 및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55명 (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9)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 호관찰소)	61명 (6급 28명, 7급 29명, 8급 4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10)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53명 (6급 10명, 7급 14명, 8급 15명, 9급 14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11) 법무행정 연구기능 강 화(법무연수원)	11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 5명, 검사 6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12)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 치추적관제센터)	20명 (6급4, 7급6, 8급5, 9급5)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지원) ① ~ ④ (생략)	제21조의2(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원 분류심사과장은 제21조 제5항, 제6항 및 제9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 제21조 제5항 및 제6항----- -----.
⑥ 지원 교무과장은 제21조 제7항 및 제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 제21조 제7항, 제8항 및 제9항-----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5]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 ·	· · <u>14</u> · ·	· · <u>15</u> · ·	+1
사무운영서기보 · ·	<u>20</u> · ·	<u>19</u> · ·	-1

[별표 5의2]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u>14</u>	<u>15</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20</u>	<u>19</u>	-1
•	•	•	
•	•	•	

[별표 7]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6,641</u>	<u>16,680</u>	+39
일반직 계	<u>16,641</u>	<u>16,680</u>	+39
•	•	•	
•	•	•	
교정관	<u>346</u>	<u>347</u>	+1
•	•	•	
•	•	•	
교감	<u>1,500</u>	<u>1,504</u>	+4
•	•	•	
•	•	•	
교위	<u>1,840</u>	<u>1,845</u>	+5
•	•	•	
•	•	•	
교사	<u>5,595</u>	<u>5,609</u>	+14
•	•	•	
•	•	•	
교도	<u>6,043</u>	<u>6,058</u>	+15
•	•	•	

.	.	.	
---	---	---	--

[별표 7의2]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6,641</u>	• <u>16,680</u>	+39
일반직 계	<u>16,641</u>	<u>16,680</u>	+39
•	•	•	
•	•	•	
교정관	<u>357</u>	<u>358</u>	+1
•	•	•	
•	•	•	
교감	<u>1,489</u>	<u>1,493</u>	+4
•	•	•	
•	•	•	
교위	<u>1,840</u>	<u>1,845</u>	+5
•	•	•	
•	•	•	
교사	<u>5,595</u>	<u>5,609</u>	+14
•	•	•	
•	•	•	
교도	<u>6,043</u>	<u>6,058</u>	+15
•	•	•	

.	.	.	
---	---	---	--

[별표 11]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7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144	2,164	+20
일반직 계	2,144	2,164	+20
보호주사	380	384	+4
보호주사보	516	522	+6
보호서기	505	510	+5
보호서기보	431	436	+5
공업서기보	3	4	+1
기계운영서기보	1	0	-1

.	.	.	
---	---	---	--

[별표 11의2]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144	2,164	+20
일반직 계	2,144	2,164	+20
	.	.	
	.	.	
보호주사	380	384	+4
	.	.	
	.	.	
보호주사보	525	531	+6
	.	.	
보호서기	514	519	+5
	.	.	
	.	.	
보호서기보	413	418	+5
	.	.	
공업서기보	3	4	+1
	.	.	
	.	.	
기계운영서기보	1	0	-1

.	.	.	
---	---	---	--

[별표 12]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636	2,646	+10
일반직 계	2,636	2,646	+10
출입국관리주사	446	448	+2
출입국관리주사보	710	714	+4
출입국관리서기	704	706	+2
출입국관리서기보	526	528	+2

[별표 12의2]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2,636</u>	<u>2,646</u>	+10
일반직 계	<u>2,636</u>	<u>2,646</u>	+10
•	•	•	
•	•	•	
출입국관리주사	<u>435</u>	<u>437</u>	+2
•	•	•	
•	•	•	
출입국관리주사보	<u>710</u>	<u>714</u>	+4
•	•	•	
•	•	•	
출입국관리서기	<u>704</u>	<u>706</u>	+2
•	•	•	
•	•	•	
출입국관리서기보	<u>526</u>	<u>528</u>	+2
•	•	•	
•	•	•	